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4
----------	------

제출년월일 : 1994. 5.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이 유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3항)

나. 연간 7일이상의 년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 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 (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2)

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2조 제4호)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 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3항)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집행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로 한다.

제19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16조의2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 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파견근무) ①(생략) ②(생략) (신설)	제10조(파견근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이하 생략 ②(생략)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 ----- ○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 -----, -----,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 -----.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현

행

개

정

안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4. (생략)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신고 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7
	○ 자녀	1
	○ 형제자매	1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 배우자(처)	1
사망	○ 배우자	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 자녀	3
	○ 형제자매, 백숙 부모	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현행 4호와 같음)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현행과 같음	7
	○ 현행과 같음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 현행과 같음	5
	○ 현행과 같음	1
출산	○ 현행과 같음	1
사망	○ 현행과 같음	7
	○ 현행과 같음	5
	○ 현행과 같음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3

현행			개정안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탈상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2 1	탈상	○ 현행과 같음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1